

제302회 정례회  
2011. 7. 22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7. 22.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30일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- 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3일

(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고규창 정책관리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6조제7호)
- 진흥원 업무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할 수 있는 업무기능을 추가(안 제8조제2항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송장섭)

- (재)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산업자원부장관”을 “주무관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

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-1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를 경유하여 <u>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-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6. <u>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사업</u>                      7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(신설)</p> <p>제8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(신설)</p>	<p>제5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-1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<u>주무관청</u>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</p> <p>제6조(사업)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1.-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(삭 제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7. <u>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</u></p> <p>제8조(운영비 지원 등) ①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